

블리자드, PC방협동조합(증인)

- 블리자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개발사이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유료가입자 1,180만 명을 보유한 유명 게임회사중 하나임. 한국에는 유한회사 형식으로 진출한 다국적 게임회사.
- 블리자드는 1994년 워크래프트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게임을 개발해 왔으며, 1998년 출시한 스타크래프트는 전 세계 패키지 판매 1,180만 장 중 한국에서만 68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림.
 - ☞ 대표적 게임 : 스타크래프트 I, II, 워크래프트 I, II, III, 디아블로 I, II, WOW 등
- 2002년 4월 비벤디 코리아로 한국 법인 설립, 2004년 11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라는 유한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최소 6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 ※ 블리자드는 프랑스 비벤디사 계열사임.
- ‘98년 스타크래프트를 출시 당시, 해외 판매량보다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더 많음. 이는 블리자드를 일약 세계적인 게임사 대열로 끌어 올리는 계기였음. 회사가 성장하는 데 한국유저와 한국PC방이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음. 한국의 좋은 인프라(IT기반, 유저, PC방)를 기반으로 성장.
 - ☞ 블리자드 프랭크피어스 부사장은 게임동아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PC방 문화가 있다. PC방에 모여 온라인게임을 함께 즐기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뛰어난 IT기술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선두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게임동아 2008.11)언급한 바 있음.
- 2010년 스타크래프트2 출시를 앞두고 한국장학재단에 향후 3년간 6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함.
- 2008년 출범한 게임문화재단은 관련업계와 정부정책 부재 등으로 그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등을 목적으로 게임업계가 90억원을 출현해 재출범하기로 함. 그러나 게임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도 미루다 최근 2억원을 출연함.
- 블리자드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출시되는 스타크래프트2는 패키지

방식으로 판매하겠다고 함. 그러나 6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기존의 패키지 판매 형식을 버리고 온라인과금형태로 가겠다고 입장변복.

- ☞ CD패키지 판매: 박스 형태의 DVD 혹은 CD 형태로 게임을 게임 유통매장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
- ☞ 온라인 과금: 이용시간당 정해진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 PC방의 경우 시간당 250원을 부과하고 있음.

○ 그 후 스타크래프트 판매 성적이 좋지 않자 슬그머니 국내유저들의 요구라며 패키지 판매를 결정.

○ 과거 블리자드는 PC방 서비스 약관에 휴업,폐업,과오납이 아닌 경우에는 환불을 안 해준다는 불공정 조항이 있었으나, 공정위에서 환불제한 규정에 대해 약관심사청구를 하자 약관을 수정한 바 있음.

○ '10.06.18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의 베틀넷 이용약관 중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 17개 조항을 자진하여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함.

- ☞ 이용자 콘텐츠 권리귀속 조항, 사업자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권리 불인정 조항 및 사업자 면책조항 등

○ 공정위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와 개인유저 및 PC방의 서비스 약관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이 추진되지 않아, 게임사들이 약관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불공정 조항을 만들고 있음.

○ 2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방송중계권) : e스포츠대회는 게임사 입장에서는 게임을 선보이기 위한 마케팅 수단임. 그런데 블리자드는 e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하는 e스포츠 대회에 대하여, 1차 게임저작권에 대해서는 1원으로 정하고, 방송중계권을 비롯 많은 부분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 2009년 국정감사 등 정치권 지적사항

- 정무위 소속 신학용의원 지적사항
 - : 공정위 자료에 의거, 블리자드 배틀넷 통합계정 이용약관의 국내 약관법 위반 소지 지적. 배틀넷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블리자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나치게 많으면서 반대로 피해발생시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논란이 이는 상황. 당시 공정위는 블리자드 이용약관을 조사하고, 수정 삭제 조치는 2010년 실시
- 문방위 소속 김금래의원 지적사항
 - : 15세 이용가 게임은 신체 훼손에 대한 묘사가 경미하고 선혈 묘사가 과도하지 않아야 하지만 월드오브워크래프트는 뼈와 내장이 보이는 등 거부감을 주는 내용이 많은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지적을 함.
- 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 지적사항
 - : 블리자드가 제작하고 있고, 국내 서비스 예정인 스타크래프트2가 흡연음주장면, 사실적 전투묘사(붉은 선혈)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18세 등급(청소년이용불가등급)이 아닌 15세 등급을 받았음.
 - :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과 비교해 18세 등급 수준으로 게임위 심의 사례집을 보면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했지만 스타2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

<질의요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마이클모하임한국지사장

- ▷한국매출 대비 사회공헌, ▷PC방 요금제 형평성 문제,
- ▷2차 지적재산권(방송중계권) 문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승재 이사장

- ▷PC방 매출기준으로 블리자드 매출 추정, ▷PC방 요금제, ▷불공정약관 및 표준약관

▲문체부 장관

- ▷불공정약관 및 표준약관, ▷2차 지적재산권(방송중계권) 문제

질의1 (블리자드코리아 지사장),블리자드는 1998년 스타크래프트를 출시하면서, 당시 해외 판매량보다 한국에서의 판매량이 더 많았다고 하던데, 당시 블리자드를 일약 세계적인 게임사 대열로 끌어 올린 계기였다고 보는가? 회사가 성장하는 데 한국유저와 한국PC방이 일조를 했다고 보는가?
(긍정일것임)

질의2 (블리자드코리아 지사장),블리자드코리아의 한국에서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줄 수 있는가?(답변 : 밝힐 수 없다)

질의2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이사장),보통 PC방에 가면 블리자드사 게임을 즐길 수 있던데, 얼마나 많은 PC방이 블리자드사 게임 가맹이 되어있나요? 블리자드에 납부하는 이용료에 대해 밝힐 수 있는가?
(답변 : 한PC방당 평균 월50만원, 총 2만3천여개 PC방 중 블리자드 가맹점 2만개로 계산 시, PC방 매출만 월 100억 추정)

질의3 (블리자드코리아 지사장), ‘노블레스 오블리주’, 잘 아시죠? PC방 판매만 놓고 보아도 매출이 어마어마한데, 이정도 규모이면 메이저 게임사 인거죠?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상당히 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스타크래프트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등 한국 게임팬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성장해온 블리자드라는 세계적인 회사가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너무 인색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국내 사회공헌 활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주겠나?

(답변 : 스타2 출시를 앞두고 한국장학재단에 향후 3년간 6억원의 장학금을 지원, 게임문화재단 2억원 출연했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질의4 (블리자드코리아 지사장), 이익을 창출해야하는 기업 입장에서 각 나라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정책을 펼칠것일텐데, 세계최초로 스타크래프트2 오픈을 한국에서 했는데, 블리자드에 있어서 한국 시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단지 게임을 테스트하기 좋은 인프라가 있고, 판로가 탄탄하기 때문인가?

그런데, 출시 전 스타크래프트2는 CD패키지 방식으로 판매하겠다고 했다가, 기존의 패키지 판매 형식을 버리고 온라인과금형태로 가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가 또다시 국내유저들의 요구라며 CD패키지 판매를 결정한 바 있음. 요금정책이 오락가락 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

국내 가격 결정은 한국법인이 하는지, 아님 본사가 결정하는가? CD패키지를 한 번 구매해서 계속 사용하면 매월 요금을 내는 것 보다 당연히 비용이 저렴해짐. 그런데 한국에서만 CD패키지 판매를 안 하려고 한 것은 한국의 탄탄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익을 더 내려고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스타크래프트1 때는 개인용이나 PC방용이나 다 CD패키지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 개인은 패키지를 판매 하면서 PC방에는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답변 : PC방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저조 및 개인용과 영업용 차이로 인해)

질의4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이사장), 스타크래프트2를 출시하면서 요금정책과 관련하여 게임사와 PC방업계의 마찰이 있는데, 블리자드가 한국유저와 PC방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PC방 역시 블리자드 게임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블리자드 게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던 한국 PC방 사업자들이 스타크래프트2 요금제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패키지를 사면 한 번만 지불하면 무한대로 사용 가능하지만, 요금제를 적용한다면 게임사 입장에서 보면 매월~ PC방이 문을 닫을 때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적<약관상> 이점이 있음. 현재 시간당 250원의 사용료를 과금, PC방을 봉으로 생각함)

질의5 (문체부 장관),연초에 공정위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게임사들의 개인 유저 이용약관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문제제기 되고 있음.

당시 약관상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사와 개인유저 및 PC방의 서비스 약관에 대한 표준약관이 없는 실정. 게임사가 주기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면서 불공정 조항을 만들고 있음.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문체부 의견은?

게임사의 개인유저와 PC방의 서비스 약관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약관으로 인한 잦은 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게임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나서주기 바람.

(한국인터넷PC방 협동조합 이사장), 현행 약관상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은?

(블리자드코리아 지사장),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은?

질의6 (블리자드코리아 지사장), e스포츠 시장은 기업의 프로모션 시장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저작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시장이라고 보는가?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e스포츠대회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가?

질의6 (문체부 장관),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 가운데 종목사가 저작권을 요구하거나 이를 인정했던 적이 있는가? 현재 e스포츠는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식 체육종목인 것 잘 알것인데, e스포츠 종목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정식 체육 종목화를 포함해 e스포츠 발전과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의7 (블리자드 지사장, PC방 협동조합 이사장) 다소 불편하고 어렵게 여겨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응해주셔서 감사함.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는지?

<참고자료>

1. 블리자드PC방 서비스 이용계약 약관내용 중 포괄적 불공정조항

5. 사업자의 의무.
- A. 가맹 PC방으로서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a. 사업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따라 블리자드에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b. 개인 정보의 모든 변경 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또는 계약시 등록한 모든 정보의 변경 사항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블리자드에 신고해야 합니다. 블리자드는 사업자가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비밀번호가 부정 사용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블리자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c. 서비스 중단,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설치 및 사용 등 서비스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블리자드에서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하거나 블리자드 PC방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모든 통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d.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책임은 블리자드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제 3자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사업자의 계정 및 블리자드 게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제 3자가 자신의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블리자드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른 블리자드의 안내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자의 소홀한 비밀번호 관리 또는 제 3자의 부정 사용으로 인해 사업자, 정보 서비스 및 블리자드에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블리자드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B. 또한, 사업자는 아래 명시된 행위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 a. 영리의 목적을 불문하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사업자의 권리가 명시된 것 이외에 블리자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일체의 부가적 행위
 - b.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c. 임의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d. 블리자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 본 계약에 명시된 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별도의 판매 행위를 비롯한 각종 이벤트 등 일체의 부가적 행위
 - e. 고의 또는 과실로 블리자드, 서비스 및 블리자드 게임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
 - f. 블리자드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PC방 서비스를 양도하는 행위
 - g.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현금 거래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 h.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률 또는 국제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i. 블리자드에서 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수정을 허가하지 않은 임의의 파일을 수정하는 행위
 - j. 블리자드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업장에서 블리자드 게임에 포함된 공지 사항이나 레이블을 제거, 변경 또는 은닉하는 행위
- C. 사업자가 위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i) 블리자드는 즉시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제한,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ii) 위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결과의 법적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블리자드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련된 사업자의 모든 사기, 부정 또는 불법적 행위를 관할 사법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 한 회 사

1. 특성

- 1) 사원책임의 유한성
- 2) 회사조직의 간편성 → 총회 서면결의 인정, 이사의 임기 및 인원 무제한, 이사회제도(×)
감사(→ 임의기관)
- 3) 법적감독의 관대성 → 공고×, 설립에 관한 법원감독×
- 4) 폐쇄성 → 사원총수제한, 제3자에 대한 지분양도 제한, 지분의 증권화 금지

2.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1) 1인회사	×	○
2) 수권자본제도	×	○
3) 설립방법	단순설립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
4) 설립시 사원의 수	2인 이상, 50인 이하	3인이상의 발기인
5) 최저자본금	1,000만원	5,000만원
6) 1주금액	5,000원	100원
7) 최초의 이사	정관규정 또는 사원총회 선임	창립총회 또는 주식인수인에 의한 선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8) 설립시 법원의 감독	×	○
9) 설립취소제도	○	×
10) 사원의 수	2인 이상, 50인 이하	1인회사 가능
11) 지분의 증권화	×	○
12) 지분의 양도, 입질	제한	자유
13) 사원의 자본총실책임	○	×
14) 이사의 임기	무제한	3년
15) 이사의 원수	무제한	3인 이상
16) 이사회제도	×	○
17) 감사	임의기관	필요기관
18) 감사의 총회소집권	○	○
19) 사원총회의 서면결의	○	○
20) 자본증감	정관변경	정관변경 불필요
21) 사채발행	×	○
22) 대차대조표 공고	×	○
23) 건설이자배당	×	○
24) 회사정리제도	×	○

3. 설립

- 1) 특징 → 사원1인설립 가능, 발기설립만 인정, 법원의 설립경과조사×
※ 정관작성 → 출자이행 → 이사, 감사 선임 → 설립등기로 설립절차 종료

※ 주식회사와의 차이점 → **발기인 x, 인수행위 x, 감사인조사 x**

※ 인적회사와의 차이점 → 설립시 기관선임, **설립시 출자전액 납입**

2) 설립절차

① 정관작성 →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 + **각사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공증인 인증으로 효력발생**

i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지분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소재지

ii 변태설립사항 :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법원감독 x**)
cf> **특별이익(x)**

-> 이사,감사,사원이 자본충실의 전보책임을 지므로 감사인등에 의한 조사를 받지 않는다.

iii 상대적 기재사항 : 이사선임, 지분양도 제한요건 가중, 사원상호간 지분양도에 대한 다른 정함, 대표이사선임, 공동대표이사, 감사선임, 사원총회 소집기간 단축, 총회 보통결의요건 완화, 의결권수에 대한 다른 정함, 각 사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

② 이사선임 → 정관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성립전 각 사원이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선임

③ 감사선임 →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

④ 출자이행

i 정관작성으로 출자액 확정

ii 이사는 회사성립전 출자의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를 받아야 함 (※법원조사 불필요)

iii 민법상 강제집행에 의한 납입 + 사원의 납입담보책임

⑤ 설립등기 → 출자이행이 끝난후 2주간내 본점소재지에서 등기

3) 설립무효, 취소

① 설립무효 꺾 제소권자 → 사원, 이사, 감사

↳ 제소기간 →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내

② 설립취소 꺾 제소권자 → 취소권이 있는 자 + 채권자

↳ 제소기간 →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내

4) 설립에 관한 책임 → **자본충실책임만** 규정

① 부족한 재산가액 전보책임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성립당시의 실가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 회사성립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 **총사원 동의로 면제 불가**

② 미필출자 전보책임

회사성립후에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이 발견된 때 회

사성립당시의 **사원, 이사,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이행되지

아 니한 현물의 가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 이사와 감사의 책임 → 총사원 동의로 면제 가능
- └ 사원의 책임 → 총사원 동의로 면제 불가

5) 사후설립

회사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것을 자본의 1/20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획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사원

- 1) 자격 → 제한없다. 자연인 또는 법인도 가능
- 2) 원수

3) 권리

- ①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배분청구권, 증자시 출자인수권
- ② 공익권 ─ 단독사원권 → 의결권, 사원총회결의관련 소송, 설립무효·취소의 소, 증자무효판결
- └ 소수사원권 → 사원총회소집청구권(5/100), 대표소송(5/100), 이사해임청구권(3/100), 청산인해임청구권(3/100), 위법행위유지청구권(3/100), 회계장부열람청구권(5/100)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5/100), 해산판결청구권(10/100)
- ※ 사원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정관규정으로 각 사원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 의무

- ① 재산출자의무 → 회사성립전 또는 자본증가의 효력발생전에 전액의 납입을 해야 한다. (※상계금지)
- ② 자본전보책임 → 부족한 재산가액 전보책임 + 미필출자전보책임

5) 사원명부

- ① 이사는 사원명부에 사원의 성명, 주소와 출자좌수 기재후, 본점비치
- ②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사원명부 열람청구 가능
- ③ 지분의 이전 및 입질의 대항요건 :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④ 회사의 사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의 기준

6) 지분의 양도와 입질

- ① 지분양도 → 사원총회 특별결의가 있는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가능
 - ※ 정관으로 양도제한 가중 가능
 - ※ 사원 상호간의 양도는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 ※ 지분양도로 사원총수 50인 초과 금지
 - ※ 자기지분 취득금지
 - ※ 사원명부의 기재가 없으면 양도로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하여 대항 불가
- ② 지분입질 → 등록질만 인정
 - i 지분입질을 위해 양도요건 필요
 - ii 지분입질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양도의 대항요건 필요

- iii 자기지분 질취 → 지분총수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효
 - ※ 회사합병, 다른회사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도초과 허용. 단, 상당기간내 질권처분 필요

5. 기관

1) 이사

- ①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 ②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의 원수, 임기, 자격등에 제한이 없다.
- ③ **선임**
 - ┌ 초대이사 → 정관규정 또는 회사성립전 **사원총회**를 통해 선임
 - └ 존속기간중의 이사 → **사원총회**에서 선임
- ④ **종임**
 - ┌ 일반적 종료원인 → 이사의 사망, 파산, 금치산 및 회사해산
 - └ **사원총회**해임, 소수사원의 해임청구에 의한 **법원판결**로 종임
- ⑤ **권한**
 - ┌ 대표권
 - ┌ 각 이사는 회사를 대표
 - └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정관**규정이 없으면 **사원총회결의**로 대표이사 선임
 - └ 정관 또는 **사원총회결의**로 **공동대표관계** 설정 가능
 - └ 범위 :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
 - └ 이사와 회사간 소송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대표자** 선임
 - └ 업무집행권
 - ┌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회사의 업무집행
 - └ 지배인 선임, 해임, 지점 설치, 이전, 폐지 → 이사 과반수 결의
 - └ ※ **사원총회**에서도 지배인 선임, 해임 가능
 - └ 이사의 자기거래
 - ┌ 감사가 있으면 **감사** 승인
 - └ 감사가 없으면 **사원총회** 승인
 - └ 이사의 경업거래 → **사원총회** 승인
- ⑥ **책임**
 - ┌ 손해배상책임
 - ┌ 경업피지의무 또는 자기거래 제한규정 위반시
 - └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
 - └ 총사원 동의로 면제 가능
 - ┌ 자본총실책임
 - ┌ 회사설립, 자본증가, 조직변경등의 경우 **미필출자**정보책임
 - └ 총사원 동의로 면제 가능
 - ┌ 제3자에 대한 책임
 - ┌ 약의,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경우
 - └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회사
 - 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소수사원(3/100)에 의한 위법행위 유지청구 가능

2) 사원총회

- 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해 권한 행사 가능 (**포괄적** 권한)
- ② **소집**
 - ┌ 소집권자 → 이사, 청산인, 감사, 소수사원(5/100), 법원명령
 - └ 소집시기 →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 └ 소집절차 → 회일 1주간 전에 각 사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 발송
 - └ ※ 정관으로 통지기간 단축 가능, 총사원 동의로 소집절차 생략 가능

③ 의결권 → 1좌 1의결권. 단, 정관으로 의결권 수에 대하여 다른 정함 가능

④ 결의사항

i 보통결의 →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

ex. 대표이사 선임, 공동대표이사 결정,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이사와 회사간 소송시 대표자 선임, 감사가 있는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이사의 경업 승인, 개입권행사, 청산승인등

ii 특별결의 → 총사원 반수 이상,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

ex. 정관변경, 이사,감사 해임, 지분양도, 증자의 경우 현물출자,재산인수,출자인수권 부여, 사원의 출자인수권 제한, 사후증자, 합병, 설립위원 선임, 회사의 해산,계속,자본감소등

iii 특수결의 → 총사원 일치

ex.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서면결의, 이사,감사의 책임 면제, 사원총회 소집절차 생략

⑤ 결의방법 → 서면결의 인정

※ 총사원 동의로 일정사항에 대한 결정을 총회개최없이 서면으로 결의 가능

※ 일정한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결의로 인정

3) 감사 → 임의기관

① 선임 ─ 최초의 감사 → 정관규정으로 선임 가능

└ 회사성립전 → 사원총회에서 선임

└ 회사성립후 → 사원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② 해임 → 사원총회 특별결의

③ 임기 → 무제한

④ 권한 →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임시사원총회 소집청구권, 설립무효 및 증자무효의 소권,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승인

⑤ 의무 → 출자미필액 및 미인수출자에 대한 전보책임, 법원명령에 의한 사원총회 소집, 이사에 게 감사보고서 제출, 이사,지배인,기타 사용인 겸직 금지

4) 감사인 → 임시기관

※ 사원총회 보통결의 또는 소수사원 청구에 의한 법원 선임

※ 회사설립의 경우 감사인 선임 불필요

6. 유한회사의 계산

1) 특징 : 대차대조표 공고 불필요, 건설이자배당제도x, 법정준비금은 결손보전에만 사용 가능, 중간배당 인정, 주식배당(x), 이익배당은 출자자수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다른 정함 가능

2) 재무제표 승인

① 감사가 있는 경우 : 정기총회일 4주전 감사에게 제출 → 감사는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 이사

에게 제출 → 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간 전부터 5년간 본점 비치

② 감사가 없는 경우 : 직접 정기총회에 제출

7. 정관변경

1) 특징 : 자본총액과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변경도 정관변경사항

2) 절차 : 사원총회 특별결의 또는 서면결의

3) 자본증가

- ① 절차
 - ┌ i 사원총회 특별결의
 - └ ii 출자의 인수 → **공모불가**,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 기재
 - └ iii 출자이행 →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급여
 - └ iv 변경등기 → 출자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완료일로부터 2주간내 본점 소재지에서 증자등기 (※자본증가의 효력발생요건)

※ 사원의 출자인수권 제한

- ┌ 증자의 경우 제3자에게 출자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 결의가 있는 때
- └ 정관 또는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출자인수권을 특정한 자에게 부여한 때

② 자본증가에 관한 책임

- i 사원의 책임 → 부족한 재산가액 전보책임
 - ※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목적인 재산의 실가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결의에 동의한 사원

이 부담하는 부족액에 대한 담보책임으로 총사원 동의로 면제 불가

ii 이사, 감사의 책임 → 미인수출자의 전보책임

- ※ 자본증가후 인수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경우 납입 또는 급여미필 재산가액에 대한 인수 및 지급책임으로 총사원 동의로 면제 가능

③ 사후증자 : 증자후 2년내 증자전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 영업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것을 자

본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대가로 취득한 경우 사원총회 특별결의 필요

④ 증자무효 :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6월내에 사원, 이사, 감

사에 한하여 소만으로 주장 가능

4) 자본감소

- ① 사원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 보호절차 (※채권자보호절차 종결시 감자효력 발생)
- ② 주주, 이사, 감사, 감자불승인 채권자에 한하여 6월내에 감자무효의 소 제기 가능

8. 합병과 조직변경

1) 합병

① 합병자유의원칙

- ※ 합병당사회사의 일방이 주식 또는 유한회사 → 존속, 신설회사도 주식 또는 유한회사
-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합병
 - ┌ 존속,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 사채상환 완료
 - └ 존속,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 법원 인가 필요

② 합병결의 → 사원총회 특별결의

③ 질권자의 물상대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간 합병시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주식을 목적으로

로 하는 질권의 효력은 주주가 받는 지분 또는 금전위에 미친다. 단, 사원명부에 질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합병등기 → 사원총회 종결일로부터 본점 2주간, 지점 3주간내 등기 (※합병등기로 합병효력 발생)

2) 조직변경

① 절차 → 총사원 동의 + 법원인가 + 채권자 보호절차 (※결의후 2주간내)

② 전보책임 → 조직변경시 발행주식 발행가액 총액은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한 경우 이사, 감사,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책임

※ 이사, 감사의 책임은 총사원 동의로 면제가능하나, 사원의 책임은 면제 불가

③ 물상대위 → 질권자는 새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금전에 물상대위 가능

④ 등기 → 본점소재지 2주간, 지점소재지 3주간내

9. 해산과 청산

1) 해산 :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발생, 사원총회 특별결의,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로 해산

2) 청산 : **법정청산만 인정**

※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